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신성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9

발의연월일 : 2017. 5. .

발 의 자 : **신성봉 · 김영길 · 천병태 이효상 · 김순점 · 권태호 강혜순 · 오세라 (8명)**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품격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중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주민참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안 제7조)

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

3. 근거법규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다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2. 구의 출자·출연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구 소재 공공기관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이하 “공공디자인”이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지속적 진흥, 품질 향상,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의 확충·운영
2.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 설치에 따른 구현계획의 지원
3. 구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최우선 가치로 적용
4.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제안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해야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효과적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구 인터

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설치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1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의 설치·운영
3. 검토사항 준수여부
4.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도시계획
2.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3. 조경
4. 건축(실내건축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디자인건축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의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 또는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일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지 않은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기준 및 시기 등)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 및 공공기관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기본적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심의는 그 실시설계의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공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구에 기부채납이나 구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필요할 경우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에 따른 대응의무의 정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위원의 위촉해제 및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수당·여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 및 발표자
2.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분과위원, 소위원회위원 및 관계전문가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 및 구성된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였거나 심의·자문 중인 사무와 그 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사무 및 위원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계속되고 그 임기만료 후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임명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6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59)

1. 의안명: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7. 5. 31. (수)
- 제 출 자 : 신성봉외 7명
- 위원회회부 : 2017. 6. 1.(목)
- 위원회심사 : 2017. 6. 9.(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신성봉 의원)

가.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품격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중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주민참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안 제7조)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

4. 근거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익희)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